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27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39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기본 복지점수를 개인별 750점에서 850점씩 일률적으로 상향 지급하고, 부양가족 점수를 최고 500점에서 300점으로 조정하고, 다자녀 점수 중 셋째아 이상 가구는 200점에서 300점으로 상향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부칙 (규칙 제39호, 2021.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2021년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